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31 선고 2019가합127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소외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 B과 소외 H, I은 F과 함께 G의 경영에 관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C는 I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8. 7. 26. G으로부터 상주시 J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박스 제조 기계 일체에 대한 제작 발주를 받고, 기계대금은 총액 584,000,000원, 납품일자 2018. 8. 25., 기계대금은 시운전 완료 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기계대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과 소외 H, F은 2018년 일자 불상경에, 원고가 설치한 박스 제조 기계 일체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 3명이 그 대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보증서(이하 '이 사건 재정보증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의뢰받은 박스 제조 기계 일체를 제작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마. G은 대금 중 169,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G은 약정한 이 사건 기계대금 584,000,000원 중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169,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보증서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자인 피고 B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414,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 약정에 따른 기계대금과 관련하여, G이 1개월 내에 50%를, 2개월 내에 나머지 50%를 결제하기로 하고, 만약 G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C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2018. 8. 1. 자로 된 보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라 한다)를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414,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의 C 서명 다음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의 인영이 피고 C의 인감도장의 인영임은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도장의 인영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 C가 아닌 K나 H로 보이고, 위 보증서의 피고 C 도장의 인영이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1)항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날인행위가 피고 C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도 이미 완성된 상태의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를 F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C로부터 직접 그 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았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이유로 안동경찰서에 H, K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이하 ‘안동경찰서 고소건’이라 한다)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 H와 K는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를 자신들이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다) 다만, H와 K는 위 안동경찰서 고소건에서 피고 C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피고 C의 e-mail 수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K가 피고 C에게 보증서 양식을 첨부하여 메일로 보낸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 C가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 작성에 사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을 제6호증의4).

라) 위 수사기관의 판단처럼 피고 C가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 작성 및 날인행위에 대하여 사전동의하여 정당한 권원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 H의 상주경찰서 고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 날인행위를 최종적으로 위임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H는 2020. 1. 21. 상주경찰서에 F을 이 사건 C 명의 보증서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상주경찰서 고소건’이라 한다). H는 ‘F의 부탁으로1) K를 통하여 이 사건 C 명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K가 피고 C가 지정한 이메일로 위 보증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 C가 연락이 와서 이 일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편인 I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 H는 당시 상주공장에 서류를 보관하고만 있었다(당시 상주공장은 G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 C가 남편 I이 G 기계 설치 및 구입에 관하여 일체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답을 하여서 보증을 설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일은 없던 일이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바) H는 상주경찰서 고소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원고에게 교부한 바 없는데 누군가 위 보증서를 가지고 가 법원에 제출하여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다만 원고가 F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받았다고 하고, F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도 F은 기억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으므로 F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을 제6호증의1).

사) F은 상주경찰서 고소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의 초안을 자필로 작성하여 H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부인하였다(을 제6호증의3).

아) 한편,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를 교부받았다고 상주경찰서 고소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의2, 6),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피고 C는 남편 I이 G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관계로 G 설립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H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K에게 맡겨두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다.

4) 그리고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에 기재된 C의 서명이 피고 C의 자필서명임을 인정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C 명의의 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 C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유영원, 판사 강화현

1) F은 원고가 G의 기계설치를 위하여 I의 처 피고 C의 보증서류가 있어야만 기계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 F 자신이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 그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여 피고 C에게 보내어 의사확인을 하라고 하였다.